

KERI Brief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keri.org)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세율의 변동 없이 과세되고 있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해외금융시장보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이 높은 점과 주식투자자의 양도소득세 확대에 의한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상황이다.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주식투자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모두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두 가지 세목 중 한 가지만 과세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 시가총액 기준이 3억 원까지 낮아지면 경제적 이중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시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도입목적(투기 규제)보다는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 새로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의 존재 이유는 세수 증대 이외에 없어 보이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권거래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로 인한 세수 결손을 우려하겠지만, 일본의 예를 볼 때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등의 자본이득세제 개편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우 큰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이동시켜 기업자금 조달을 도와 주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증권시장으로 투자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적합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양도소득세 확대시기에 맞추어 0.2%,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 이자·배당·양도소득(자본이득)의 손익통산 및 세율 인하 등 이원적 소득세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I. 검토 배경

□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세율의 변동 없이 과세되고 있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증권거래세율은 은행 예금금리가 연 10%에서 1%대로 떨어지는 동안에도 변화가 없었고,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0.3%라는 세율은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는 계속 확대될 예정이며, KOSPI, KOSDAQ, 비상장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올해 4월부터 15억 원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10억 원 이상, 2021년 4월부터는 3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하게 됨¹⁾

□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거세지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로 주식투자자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제20대 국회에도 같은 취지의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 주요 내용은 증권거래세율을 인하(0.5% ⇒ 0.1%)하는 것임

□ 증권거래세제의 국제적 정합성과 증권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국제적 추이를 볼 때 1990년대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국가가 많았고, 현재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두 가지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 우리나라도 일부 과세되던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는 세제개정이 필요함

- 다만, 최근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국가도 있어 폐지 및 도입 사례의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 현행 증권거래세를 검토하고, 국제적 추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증권거래세 제도를 제안하려 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제167조의8

II. 현행 증권거래세 및 기타 관련 과세

1.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는 1963년부터 과세되었으며, 1971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폐지되었다가 1979년 자본 시장에서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재도입되었음²⁾
- 현재 증권거래세는 당초 투기거래 방지라는 도입 목적보다 세수 측면에서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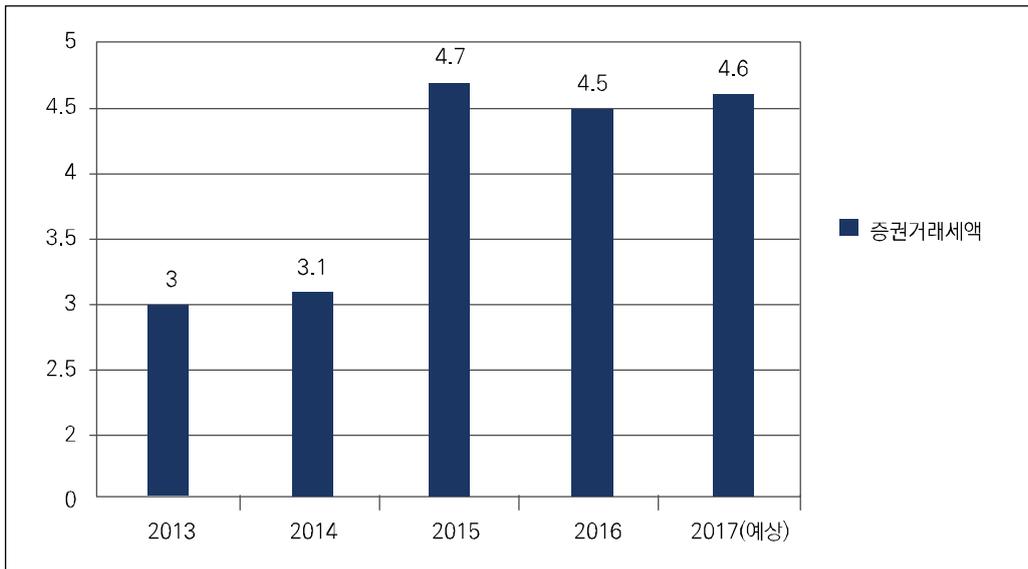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증시 누적 거래대금은 2,164조 원으로, KOSPI에 0.15%, KOSDAQ에 0.3%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추산하면 4조 6천억 원이 넘음. 이는 2015년 역대 최고치인 4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임

- 2016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4.5조 원)와 증권거래세 관련 농어촌특별세(1.6조 원)를 합치면 총 6.1조 원으로 국세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세수 측면에서 중요한 세목임

2)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그림 1〉 증권거래세수 추이

(단위: 조 원)



* 출처: 2017 국세통계연보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과세함³⁾

-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소액주주·대주주 구별 없이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0.5%의 세율로 과세함(비상장주식 등 기타의 경우)
 - 자본시장육성을 위해 KOSPI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세율 0.1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추가로 부과(총 0.3%)하고, 코스닥시장 등(KOSDAQ, KONEX, K-OTC)에서 거래되는 경우 0.3%의 세율로 과세함⁴⁾
- 개인 간에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됨⁵⁾

2. 기타 주식거래 관련 과세

□ 주식거래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기타 인지세가 과세됨

- 주식양도소득은 대주주의 상장법인주식,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등 소득세법상 열거된 경우에 과세되므로, 소액주주의 상장법인주식만 비과세되고 있음⁶⁾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고,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됨
 -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지분비율이 1%(코스닥 시장 2%, 코넥스 시장 4%) 이상이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총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 원(코넥스 시장 10억 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포함)를 말함
-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나머지 대주주의 주식은 20~25%이고,

-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나머지 소액주주의 주식은 20%임⁷⁾

○ 한편, 증권의 권리 이전(양도)에 4백 원의 인지세를 부과함

3)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7조
 4) 증권거래세법 제8조
 5) 증권거래세법 제3조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7)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III. 국제적 동향과 해외 사례

1. 국제적 동향

□ 증권거래세는 주로 단기 투기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과세되었는데,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1990년대를 전후하여 여러 국가가 폐지하였음⁸⁾

□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세의 도입이 주장되었고, 2013년 2월 EU 재무장관들은 독일, 프랑스 등 11개 회원국들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승인하였음

○ 금융산업이 발달한 영국이 반대하였고 유럽중앙은행도 금융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⁹⁾ 실제 시행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 몇 개국에서만 이뤄졌음

8) 미국 1965년 폐지, 스웨덴 1991년 폐지, 독일 1991년 폐지 등

9) 금융연구원, "EU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배경과 향후 전망", 주간 금융브리프 22권 6호, 2013.2, p.18

〈표 1〉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의 국내외 현황

국 가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
한 국	○ (0.3%)	○
미 국	×	○
일 본	×	○
영 국	△ (0.5%) ¹⁾	○
프랑스	○ (0.3%)	○
독 일	×	○
룩셈부르크	×	○
중 국	○ (0.1%)	×
대 만	○ (0.15%)	○
홍 콩	○ (0.1%)	×
태 국	○ (0.1%)	×
싱가포르	○ (0.2%)	×

주: 1) 영국은 증권의 등록시 매수자에게 인지세를 부과함

* 출처: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2. 일본, 스웨덴의 증권거래세 폐지 사례

1) 일본

□ 일본은 10년간 전환기를 거쳐 증권거래세를 폐지 하면서 주식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음

- 1953년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고, 1988년 증권거래세율을 인하(0.55% → 0.3%)하면서 주식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여 1998년까지 10년간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가 병존하였음
 - 1998년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1%로 인하하였고, 1999년 증권거래세 폐지¹⁰⁾
 - 일본의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와 상호대체관계였음
 - 1953년 증권거래세가 도입된 것은 양도소득세를 대체하려는 목적이었음¹¹⁾
 - 1999년 일본식 금융개혁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소득의 일체화 차원에서 자본이득과세의 신고분리과세화(20% 세율)를 추진함¹²⁾
- * 이 개혁은 일본의 금융시장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세계화된 모습을 가짐으로써 구미 시장에 비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1997년 이후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였음¹³⁾

□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을 살펴보기 위해 1988~2005년 기간을 거래세기간과 병존기간, 그리고 양도세기간으로 나누어 분석

- 병존기간의 세부담(0.5~1%)은 거래세(0.6%)나 양도세(0.3~0.5%) 단독 기간보다 약 2배 수준이며, 양도세 기간의 세부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임

- 주식양도소득세는 단독 부과될 경우 증권거래세가 단독 부과되는 경우보다 조금 낮게 세부담이 발생하였음
 - 주식양도소득세로 대체된다면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결손은 크지 않을 것임
-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가 병존한 기간에는 세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주식시장도 위축되었음
 - 병존기간에는 주식 거래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자 거래액이 증가하였음

10) 세계개정요강에 따르면 “유가증권거래세 및 거래소세에 대해서는 1999년까지 금융시스템개혁의 진전상황, 시장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개정하되, 주식등 양도차익과세의 적정화와 병행하여 폐지한다”라고 함

11) 당시 양도차익 계산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양도소득세를 포기하였음

12) 오윤·임동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저널」 제14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3.2, p.73

13) Dick K. Nanto, Japan's Landmark Financial Deregulation : What It Means for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2000.6

〈표 2〉 일본의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의 세부담 변동

(단위: 10억 엔)

구 분	거래액 (A)	주식양도소득세 (B)	증권거래세 (C)	세수 합계 (D=B+C)	D / A	
거래세	1988	332,757	0	2,123	0.64%	
병존	1989	386,395	1,146	1,233	0.62%	
	1990	231,837	1,374	748	0.92%	
	1991	134,159	923	443	1.02%	
	~					
	1996	136,169	638	391	1,029	0.76%
	1997	151,445	475	403	878	0.58%
	1998	124,101	408	172	580	0.47%
양도세	1999	210,236	926	926	0.44%	
	2000	290,325	929	929	0.32%	
	2001	225,238	629	629	0.28%	
	2002	209,229	523	523	0.25%	
	2003	255,342	936	936	0.37%	
	2004	357,286	1,452	1,452	0.41%	
	2005	535,118	2,906	2,906	0.54%	

* 출처: Fact Book 2010(Japan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2010.9.22), 2018년 조세전문가네트워크 최종보고회 p.40 표 수정

2) 스웨덴

□ 스웨덴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세수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1984년 거래소 내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대해 0.5%의 세율로 과세하는 증권거래세 도입
 - 예상보다 증권거래세수가 적은 것을 이유로 1986년에는 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였음

- 1991년 말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었으며, 소득과세 체계가 이원적 소득과세체계¹⁴⁾로 전환되었음

□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졌음

-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적었고,¹⁵⁾ 자본의 국외이탈도 심각했음
 - 1986년 증권거래세율이 두 배로 인상된 후, 스웨덴 주식시장 거래물량의 30%가 해외(런던거래소)로 이동하였고, 1990년에는 전체 물량의 50%가 런던으로 이동하였음¹⁶⁾
- 증권거래세의 도입으로 금융비용이 높아지고 이에 자본유출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졌지만, 세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14) 이원적 소득과세체계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세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임
 15) 세수가 연평균 15억 크로네 정도 예상되었지만 실제 연평균 5천만 크로네 수준에 그침
 16) S.R. Umlauf, "Transaction Taxes and the Behavior of the Swedish Stock Marke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3, 1993, pp.227-240

〈표 3〉 스웨덴의 증권거래세수 변화와 국외거래

(단위: %)

구 분	GDP 대비 증권거래세수 비중	스웨덴 주식의 런던거래 비중
1984 (증권거래세 도입)	0.10	-
1985	0.13	-
1986 (세율 2배 인상)	0.26	-
1987	0.35	30
1988	0.34	48
1989	0.45	51
1990	0.43	52
1991 (증권거래세 폐지)	0.25	-

* 출처: Stephan Schulmeister, Margit Schratzenstaller, Oliver Picek, A General Financial Transaction Tax - Motives, Revenues, Feasibility and Effects, WIFO, 2008.3, p.22, 수정

3. 프랑스 등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 사례

□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의 강화, 조세 부과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9년 프랑스와 독일이 토빈세¹⁷⁾ 도입을 주장

○ 2011년 9월 EU 집행위원회는 “금융거래세 이사회 제안서”¹⁸⁾를 통해 금융거래세 도입방안을 EU 의회에 제출하였음

- EU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제안된 금융거래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금융상품이고, 세율은 주식, 채권 및 외환거래 0.1%, 파생상품 0.01%이며, 금융기관만을 납세의무자로 함¹⁹⁾

-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연간 300~350억 유로(도입 추진 11개국 세입의 1%) 상당의 세수 확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도입으로 증권거래와 파생상품거래가 각각 20%와 9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하였음²⁰⁾

○ 2013년 2월 EU 재무장관들은 독일, 프랑스 등 11개 회원국들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승인했고,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함

- 모든 27개 EU 회원국이 도입하는 쪽으로 추진되었으나, 영국 등 일부 회원국들²¹⁾의 반대로 11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만 먼저 도입하기로 함

17) 모든 국가가 자국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외환거래에 대하여 0.1%에서 0.5% 정도의 낮은 일정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James Tobin이 1972년에 주장한 세제임(박은태, 「경제학사전」, 경연사, 2011)

18)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a common system of financial transaction tax

19) 세부담 증가, 금융경쟁력의 손실, 금융기관 이전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소세율 제안

20) 전문가들은 세수 증가분을 금융위기의 대응비용으로 사용하면, 거래의 감소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그러나 영국 등은 금융시장 위축 및 소비자에 대한 세금 전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며 반대함(European Commission, “The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a common system of FTT”, 2011.9.28., p.17)

21) 영국, 룩셈부르크, 체코, 몰타 등 4개국이 반대하였고, 12개 국가는 유보하였음

- 현재 EU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국가는 11개 국가에서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10개국임²²⁾
 - 에스토니아는 2015년 12월 금융거래세가 세수 측면에서 기대할 수 없고 금융기관의 반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금융거래세 도입 절차를 중단함
 - 독일의 경우 지금까지 도입을 연기하고 있음

□ 2012년 8월 프랑스는 프랑스 수정 재정법안 제5조에 따라 금융거래세를 도입했음²³⁾

- 프랑스는 10억 유로를 넘는 상장기업의 주식 매입에 0.2%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2017년 세율을 0.3%로 인상하였음
- 도입 초기인 2012년 8~11월간 2억 유로의 금융거래세 세수를 거두어 좋지 않은 성과를 보였지만, 2016년에는 11억 유로의 금융거래세 세수로 세수 확대에 도움되고 있음

4. 시사점

□ 주식거래과세에 관한 국제적 흐름은 1990년대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국가가 많았으며, 2000년대에는 자본이득세(주식양도소득세)를 개편하고 있음

-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 두 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권거래세나 자본이득세 중 하나의 세목만 과세하고 있음
- 특정 국가에서는 증권거래세의 폐지와 자본이득세의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었음
 -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 두 가지 모두 과세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주식시장의 위축을 가져왔다는 점과 10년간의 전환기를 두어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인 점은 참고할 만함

- 스웨덴의 경우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하였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이원적 소득세제로 전환하였음
- 한편,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국가가 있음
 - 프랑스의 사례로 볼 때 금융거래세는 세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²⁴⁾

22)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implementing enhanced cooperation in the area of 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 Letter from Mr Sven Sester, Minister of Finance, Republic of Estonia". 2016.4.12

23) Article 5 of the French Amended Finance Bill of 14 March 2012

24) Gunther Capelle-Blancard · Olena Havrylchuk, The Impact of the French Securities Transaction Tax on Market Liquidity and Volatility, Documents de travail du Centre d'Economie de la Sorbonne 2013.85, 2013, p.30

IV. 증권거래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외금융시장보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이 높은 점과 주식투자자의 양도소득세 확대에 인한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임

○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17년 50% 인하, 싱가포르(0.2%)보다 높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음

- 주변국보다 과도한 증권거래세는 자본 국외유출의 우려가 있음

○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투자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투자자의 세부담이 확대될 우려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모두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두 가지 세목 중 한 가지만 과세하고 있음

-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음

- 2021년 이후 시가총액 기준이 3억 원까지 낮아지면, 경제적 이중과세 대상자가 현재(8천 명)의 9.3배 수준(7.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²⁵⁾

○ 또한 증권회사의 매매수수료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증권거래세율이 유지되어 투자자는 부담하는 주식거래비용이 크다고 인식하게 됨

- 예를 들어, 2016년 매매수수료율은 0.0792% 수준으로 2010년 매매수수료율(0.1184%) 대비 0.0392%p 감소되었으나, 증권거래세율(0.3%)은 매매수수료율(0.0792%)의 약 4배 수준²⁶⁾

▣ 증권거래세는 인하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자본이득과세상 중립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함과 동시에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 인하 및 손익통산의 범위를 넓히는 세제개혁을 검토할 필요

○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시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여야 함

- 증권거래세는 당초 도입목적(투기 규제)보다는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음. 특히,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권거래세의 개정이 필요함

*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로 인한 세수 결손을 우려하겠지만, 일본의 예를 볼 때 주식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등의 자본이득세제 개편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임²⁷⁾

- 주식거래과세의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새로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의 존재 이유는 세수 증대 이외에 없어 보임

25) 2018년 조세전문가네트워크 최종보고회 p.45 표 참고

26)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자료 참고

27)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주주 범위 확대에 인한 세수효과 추정은 과세대상 인원, 양도차익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개정되어 어렵다고 함(국회예산정책처,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7.11, p.79). 또한 증권거래세의 세수도 증권거래세 인하시 주식거래 증가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수결손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음. 그러나 주식양도소득세의 세수증가분이 증권거래세의 세수결손분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매우 큰 규모의 유동성 자금²⁸⁾을 증권시장으로 이동시켜 기업자금 조달을 도와주고, 더 나아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증권시장으로 투자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를 제안함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양도소득세 확대시기에 맞추어 0.2%,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할 필요

○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 이자·배당·양도소득(자본이득)의 손익통산 및 세율 인하 등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상장주식(소액주주), 채권 등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의 범주에 포함하고, 자본이득(이자, 배당, 양도차익)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을 허용해야 함
- 세율은 20% 이하의 저세율 및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자본이득은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함
- * 자본이득은 국제적 이동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자본이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조세로 인한 투자의사결정의 왜곡을 줄일 수 있음

28) 2018년 7월 기준 시중 부동산자금은 약 1,105조 원이며, 부동산자금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에 6개월 미만 정기예금과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을 더한 금액임(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참고)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8년 11월 05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타워 46층